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1-03

청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1114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redacted]공단

피 고 [redacted]군수

변 론 종 결 2015. 8. 27.

판 결 선 고 2015. 9.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redacted]군 A, B, C 토지 매매에 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24,651,000원 및 등록세, 지방교육세 13,296,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1-03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6. 29. 국민보건향상 및 사회보장증진을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건강보험료의 부과·징수 및 보험급여의 관리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7. 23. D과 사이에, 원고의 괴산증평지사 신축사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D 소유의 [redacted]군 A 토지, B 토지,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9. 15.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2010. 9.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0. 9. 1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 제27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원고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의 면제를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4. 6.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아래 내역과 같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① 취득세 및 가산세 합계 22,225,500원(= 본세 15,000,00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3,000,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4,225,500원)

② 농어촌특별세 및 가산세 합계 2,222,550원(= 본세 1,500,00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300,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422,550원)

③ 등록세 및 가산세 합계 11,112,750원(= 본세 7,500,00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1,500,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2,112,750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1-03

④ 지방교육세 및 가산세 합계 2,072,550원(= 본세 1,500,00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150,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422,550원)

마. 원고는 2014. 9. 2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3.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5, 26 내지 3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와 그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유지인 [redacted]군 E 토지, F 토지(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고 한다)는 사옥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용도상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는바, 원고는 2010. 12.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국유지를 취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273조 제3항 단서의 유예기간의 기산일인 부동산의 '취득일'은 이 사건 국유지의 취득일인 2010. 12. 29.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이 사건 국유지를 취득하는데 추가적으로 소요된 기간인 약 3개월은 위 유예기간 1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1. 10. 25. 그 지상 사옥 신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위 1)항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바,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1-03

3)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더하여 부과하였으나, 원고에게는 신고·납부 등 의무위반과 관련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설령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부과한 가산세는 원고의 귀책사유에 비해 너무 과중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취득의 시기는 '잔금지급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 역시 그 잔금지급일인 2010. 9. 15.로 보아야 할 것이고(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토지를 2010. 9. 14.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같은 날 피고에게 구 지방세법 제27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를 신청하였다), 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이 사건 국유지를 포함한 사옥부지 전체의 취득일로 보거나 원고가 이 사건 국유지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기간인 약 3개월을 구 지방세법 제273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1년의 유예기간 초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외하여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1-03

하는 것으로 본다면, 구 지방세법 제273조 제3항 단서의 적용범위가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지나치게 확장되거나 불명확해지는 결과가 되는바, 위와 같은 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이 사건 국유지의 취득시기인 2010. 12. 29.로 본다고 하더라도,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 등의 공사를 시작하였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그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바(2008. 5. 29. 선고 대판 2008두33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 위 신축사옥에 대한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은 위 2010. 12. 29.로부터도 1년이 이미 경과한 2012. 7. 13.에서야 이루어졌으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1. 10. 25. 이 사건 토지 위의 신축사옥 공사의 착공신고를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 지방세법 제273조 제3항 제3호 단서의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면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때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따른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겼다는 등의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며, 이러한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1-03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규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성격,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의 정도, [redacted]공단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2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적어도 2010. 4.경 이미 이 사건 토지 위에 사옥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국유지의 매입이 필요함을 알고 있었던 점, ② 이에 그 무렵인 2010. 4. 14.경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국유지의 매입 자격 및 절차 등과 관련하여 질의·회신이 오고갔고, 피고가 2010. 6. 11.자 회신(갑 제8호증)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국유지가 현재 토지이용계획상 대로3류(주간선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그 해소 전에는 매각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도로 저촉 부분이 해소될 경우 매각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기도 하였던 점, ③ 이와 같이 이 사건 국유지의 매입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원고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안영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피고에게 구 지방세법 제27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서둘러 먼저 취득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거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 이후 곧바로 이 사건 국유지를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④ 원고는 2010.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1-03

국유지에 관한 매입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국유지에 관한 국유재산관리계획이 2010. 11. 30. 변경되어 그 이후에서야 원고가 비로소 이 사건 국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는데, 달리 국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지연된 것이라고 볼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⑤ 보건복지부장관의 예산 승인, 사옥 신축 계획의 수립 및 공사업자의 선정 절차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사정은 원고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고려하였어야 하는 사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시 피고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음에도 그 취득시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사옥 신축의 착공조차 하지 못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 1년의 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거나 구 지방세법 제273조 제3항 제3호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원고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해당될 뿐이다. 따라서 이를 들어 원고에게 그 신고 및 납부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1-03

가 부과한 가산세가 지나치게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는바,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방승만

판사 인형준

판사 정혜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1-03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삭제

2. 삭제

제273조 (연금 및 건강보험 등 지원을 위한 감면)

③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1-03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9조 제3항, 제22조 제3항 본문, 제29조 제2항 제2호 나목, 제41조 제3항 본문, 제43조 제3항 본문, 제50조 제3항 본문, 제62조 제1항, 제89조 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1-03

3항 본문 및 제92조 제2항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 경우

2.「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제2항 및 제9조 제2항·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